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3년 9월 1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9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지급, 의료지원 및 교육·취업보호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를 추가하고자 함(안 제2조 제2항)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,

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전우회에서 각각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가 수용함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임.

○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에게도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수준의 수당지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·취업보호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세에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으나 지방세 감면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동 조례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
○ 동 조례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사항임.

○ 참고적으로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수혜를 받게되는 감면대상자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3명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19명 등 총 122명이며 감면세액은 연간 약 42백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.

- 경기도전체 감면대상자 : 총 3,681명,
에상감면세액 : 1,627백만원

※ 참고자료

- 파주시자동차등록대수(2003. 8월말현재) : 85,393대
- 2002년도 자동차세 징수액 : 8,825백만원
- 2003년도 자동차세 징수액(상반기) : 5,724백만원

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

제12조 (에우의 기본이념)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·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.

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

제4조 (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애등급) 법 제4조제2호에서 “장애등급”이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을 말한다.

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

제3조 (적용대상자) 이 법은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·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.

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시행령

제9조 (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등) ①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